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8. 14.
4. 회부일자 : 2018. 8. 21.

II. 개정이유

-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의 위치(도로명 주소)를 정정
- 2019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12개교(원)을 각각 신설

III. 주요내용

1. 초등학교 : 위치 정정 1개교, 신설 3개교

가. 위치 정정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어울초등학교(은평구 통일로 650) (도로명주소 정정)

나. 신설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하늘숲초등학교(구로구 천왕동 산13-1)
- 서울향동초등학교(구로구 향동 160)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해누리초등학교(송파구 가락동 479)

2. 중학교 : 신설 1개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해누리중학교(송파구 가락동 479)

3. 유치원 : 신설 8개원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평구 통일로 650)
 -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평구 가좌로6길 20)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향동유치원(구로구 향동 159)
 -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금천구 독산로78다길 89)
 - 서울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영등포구 신길로 190)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악구 양녕로6나길 1)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서울장위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18. 7. 18. ~ 8. 7.)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호로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어울초등학교의 위치(도로명 주소)를 정정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12개교(원)을 신설하는데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어울초 위치 정정의 건

- 어울초 위치 정정의 건은 2018년 9월 1일자로 개교한 어울초의 위치를 기존 ‘은평구 통일로 640’에서 ‘은평구 통일로 650’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어울초 신설의 건은 지난 제281회 정례회(2018.6.29.) 당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학교신설로 제출된 안건으로, 당시 제출된 안건에 어울초의 위치는 ‘은평구 통일로 640’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안건 제출시(2018.5.31.)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평구로부터 어울초의 도로명 주소가 고시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29호(2018.3.15.)

개발사업지구임을 이유로 학교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구청과 유선으로만 확인하여 어울초의 위치를 표기·제출하였습니다.

- 비록 학교의 신설 위치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명확한 도로명 주소의 부여 및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시 동 안건 제출시인 2018년도에는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이 완료 되는 등 이미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²⁾,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은평구 고시가 당시 안건 제출일보다 2달 이상 먼저 이루었다는 점에서, 어울초 도로명 주소는 안건제출 당시 충분히 정확한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안건 제출시 신설·이전되는 학교의 주소를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오기에 따른 사후적 조례 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욱이 현재 동 조례에 표기된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법」 제 21조³⁾에 따라 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39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50	2018-03-15	건축물 신축	2009-07-10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바라는 뜻으로 명명

2) 어울초가 위치한 녹번 1-3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2008년 9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2년 11월 22일 공사착공, 2015년 7월 22일 준공인가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5월 26일 조합이 해산됨으로써, 동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됨.

3)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신설 또는 이전된 학교가 여전히 지번주소 또는 종전 주소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상의 학교 주소를 일괄 검토하여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 미반영 사례)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현황(동 조례 [별표1])

학교명	조례상 위치	개교일	이전일	비고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1	2016.3.1		도로명 주소 미변경
서울금나래초등학교	금천구 독산동 441-28	2017.3.1		
서울연신초등학교	은평구 응암동 242-424		2013.3.1	
서울공진초등학교	강서구 공항동 1324		2014.11.7	종전 주소 (조례 미개정)
서울공항초등학교	강서구 공항동 399		2014.10.31	

나. 학교 신설의 건

1) 단설유치원, 초·중학교 신설의 건(하늘숲초 등 5건)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된 하늘숲초, 향동유, 향동초, 해누리초, 해누리중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2019년 3월 1일자 개교에 앞서 동 개정조례안에 학교설립을 반영하는 것은 법적 취지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가칭 학교명	학교명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일	결과
천이초등학교	서울하늘숲초등학교	2015.12.21	승인
향동유치원	서울향동유치원	2016.03.09	승인
향동초등학교	서울향동초등학교	2016.12.05	승인
가락일초·중통합학교	서울해누리초등학교	2017.11.29	승인
	해누리중학교	2017.11.29	승인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 한편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제4조4)에 따라 유치원(단설),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붙임〕 참조).

○ 이 중 서울시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인 가칭)가락일초중은 강동송과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해누리초중학교’로 결정⁵⁾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해누리’라는 교명이 지역의 특성·문화·역사·상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솔빛’, ‘솔가람’, ‘가람솔’, ‘송락’, ‘으뜸솔’이 추천 교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학교지원과-9063).

이와 관련하여 강동송과교육지원청은 제2차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입주예정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해누리초’, ‘해누리중’으로 의견을 다시 제시함에 따라(강동송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6767),

서울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명을 ‘서울해누리초’, ‘해누리중’으로 최종 결정하였는 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5) 서울특별시강동송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6426(2018.7.2.)

‘가운초중학교’, ‘가일초중학교’, ‘가현초중’, ‘가람초중’, ‘가현초중’, ‘한빛초중’, ‘가영초중’, ‘해누리초중’ 등을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제안하였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해누리초중’이 재적위원 8명중 찬성6명으로 결정(2018.6.28.)

[표-2] 학교명 심의 결과

가칭 학교명	검토 명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재심의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항동유	서울항동유	서울항동유	2018. 3.29.	서울항동유	2018. 7.11.	-	-
항동초	서울항동초	서울항동초	2018. 3.29.	서울항동초	2018. 7.11.	-	-
천이초	서울하늘숲초	서울하늘숲초	2018. 3.29.	서울하늘숲초	2018. 7.11.	-	-
가락일초중 (통합운영)	서울해누리초	해누리초중	2018. 6.28.	'해누리'와 위원회 추천교명 중 자문위에서 재논의하여 결정	2018. 7.11.	서울해누리초	2018. 7.13.
	해누리중					해누리중	2018. 7.13.

○ 한편 하늘숲초와 항동초, 그리고 항동유치원은 2018년 3월과 9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부지매매계약의 지연과 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일정의 지연, 그리고 입주시기의 지연 등의 사유로 개교시기가 2019년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교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예정일이 2019년 3월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개교 이후에도 주변 공동주택의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안전 사고 및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학교 설립 공정률 현황

(기준일: 2018. 7.31.)

학교명	위치	최초 개교 예정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비고
서울항동유치원	구로구 항동 159	2018. 9. (2018. 9.→2019. 3.)	2018.04.26.	2019. 2.	35% (콘크리트타설)	항동지구 입주시기 지연
서울하늘숲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동 산13-1	2018. 3. (2018. 3.→2019. 3.)	2017.10.17.	2019.03.09.	38.0% (골조공사 중)	부지매매계약 지연
서울항동초	구로구 항동 160	2018. 3. (2018. 3.→2019. 3.)	2018.01.09.	2019.02.18.	40.0% (골조공사 중)	항동지구 입주시기 지연
서울해누리초등학교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19. 3.	2018.05.01.	2019.01.25.	13.11% (슬라브타설)	- 통합운영학교
해누리중학교						- 시공업체와 공정지속협의

2)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어울초병설유치원 등 7개원)

- 다음으로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어울초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병설유치원을 2019년 3월에 각각 초등학교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서울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개로 전체 공·사립유치원(886개)의 25.5%에 불과하고, 공립유치원의 학생 수용률 또한 서울시 전체 유치원 학생수의 1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의 공립유치원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인 52.6%⁶⁾에 비해 상당히 낮고, 공립유치원 학생수용률도 전국 평균인 24.8%보다 낮은 상태로,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은 공교육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표-4] 2018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현황

(기준일: 2018. 7.31.)

유형	학교수(교)	학급수(반)	학생수(명)	학생수용률(%)
공립	226	844	15,327	18.02
사립	660	3,189	69,727	81.98
합계	886	4,033	85,054	100.00

- 더욱이 동 안건에 제출된 병설유치원 설립지역은 2019학년도 개교 시 공·사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이 58.2% 미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취학수요 또한 높은 상황인바, 유아교육에

6) '2017년도 학교급별 규모',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7.12)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유치원(원)	3	4,744	4,282	9,029
학생수(명)	249	172,272	522,110	694,631
수용률(%)	0.04	24.80	75.16	100.00

대한 공교육확대라는 측면에서 병설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5] 병설유치원 유아수용전망

학교명	취학권역		유치원 정원			유아 수용률 (%)	취학수요(명)	
	행정동	취원대상 유아수(명)	설립유형별	시설수 (개)	정원(명)		공립 희망	공립 과부족
서울어울초 병설유치원	서부3 (불광1~2동, 대조동, 녹번동)	2,910	공립유치원	4	272	32.7	1,667	△1,395
			사립유치원	5	680			
			계	9	952			
서울응암초 병설유치원	서부5 (응암1~3동)	1,680	공립유치원	3	164	41.9	905	△741
			사립유치원	5	540			
			계	8	704			
서울향동 유치원	남부1 (오류1~2동 수궁동)	3,048	공립유치원	3	408	45.8	1,966	△1,558
			사립유치원	9	988			
			계	12	1,396			
서울정심초 병설유치원	남부5 (가산동 독산1~4동)	2,457	공립유치원	5	400	42.3	1,519	△1,119
			사립유치원	5	640			
			계	10	1,040			
서울우신초 병설유치원	남부8 (영등포본동 신길1, 3~7동 대림1~3동)	3,448	공립유치원	5	292	58.2	2,006	△1,714
			사립유치원	16	1,715			
			계	21	2,007			
서울송정초 병설유치원	강서1 (방화1~3동 공항동)	3,921	공립유치원	5	470	40.6	2,780	△2,310
			사립유치원	5	1,122			
			계	10	1,592			
서울신봉초 병설유치원	동작관악9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3,011	공립유치원	2	180	44.8	1,873	△1,693
			사립유치원	8	1,170			
			계	10	1,350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	성북강북7 (장위1~3동 석관동)	1,577	공립유치원	4	292	48.7	914	△622
			사립유치원	6	491			
			계	10	783			
서울 취학권역 평균		2,316	공립유치원	2.4	189	44.4	1,354	△1,165
			사립유치원	6.6	839			
			계	9.0	1,028			

○ 한편 금번에 신설되는 8개 유치원 중 3개 유치원(어울초병설유, 신봉초병설유, 장위초병설유)는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유치원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

공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동 안전에 제출된 학교 중 일부학교는 2018년 7월 31일 기준 현재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률 또한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공정률은 통상 병설유치원이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동 안전이 지나치게 빠른 시기에 제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이처럼 조기에 이루어진 학교설립 안전 제출은 설립 예정 학교에 대한 현재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향후 공사 지연 및 사정변경에 따라 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조례 심사 완료에 따라 학교는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류 발생시 동일한 조례가 계속해서 개정됨으로 인해 동 조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동 조례의 개정 및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이 충분히 진척되고 무르익었을 때 안전을 제출하는 등 안전제출 시기에 대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일정 단축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사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한편, 석면 제거가 이루어진 유치원의 경우 개원까지 석면 잔존물의 발생에 따른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6] 병설유치원 공정률 현황

(기준일: 2018. 7.31.)

학교명	위치	최초 개교 예정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비고
서울어울초 병설유치원	은평구 통일로 650	2018. 9. (2018. 9.→2019. 3.)	2016.12.29.	2018. 8.14.	92% (마감공사)	9월 개원에 따른 문제점 해소
서울응암초 병설유치원	은평구 가좌로6길 20	2019. 3.	2018.10.	2019. 2.	0% (설계 입찰중)	-
서울정심초 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 78다길 89	2018. 9. (2018. 9.→2019. 3.)	2018.10.	2019. 2.	0% (설계 진행중)	적정 공기확보 위해 연기 석면 없음
서울우신초 병설유치원	영등포구 신길로 190	2019. 3.	2018.10.	2019. 2.	0% (설계 진행중)	석면제거 필요 2월내 준공가능
서울송정초 병설유치원	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2019. 3.	2018.12.	2019. 3.	0% (설계 진행중)	겨울방학 석면 제거공사 후 진행
서울신봉초 병설유치원	관악구 양녕로6나길 1	2018. 3. (2018. 3.→2019. 3.)	2018. 7.26.	2018.10. 2.	10% (석면제거 중)	1학급→3학급 신설로 변경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	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2019. 3.	2018. 7.26.	2018. 9. 8.	5% (착공)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시립학교 교명 제정(변경)절차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p>① 교명 변경(안) 건의</p> <p>↓</p> <p>② 학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동창회, 교직원 등</p> <p>↓</p> <p>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p> <p>↓</p> <p>④ 교명 변경(안) 결정</p> <p>↓</p> <p>⑤ 교명 변경 신청 - 교명변경 사유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 증빙서류</p> <p>↓</p> <p>⑥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자문</p> <p>↓</p> <p>⑦ 교명 제정(변경) 심의 요구 - 교명 제정(변경) 심의 요구자료 - 교명제정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p> <p>↓</p> <p>⑧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p> <p>↓</p> <p>⑨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주례, 개정</p> <p>↓</p> <p>⑩ 교명사용(학칙변경인가 후)</p>	<p>① 교명 변경(안) 건의</p> <p>↓</p> <p>② 학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동창회, 교직원 등</p> <p>↓</p> <p>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p> <p>↓</p> <p>④ 교명 변경(안) 결정</p> <p>↓</p> <p>⑤ 교명 변경 신청 - 교명변경 사유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 증빙서류</p> <p>↓</p> <p>⑥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p> <p>↓</p> <p>⑦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주례, 개정</p> <p>↓</p> <p>⑧ 교명사용(학칙변경인가 후)</p>
<p>※ 교명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교명 제정(안)을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 제출</p>	<p>※ 교명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교명 제정(안)을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제출</p>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